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64

발의연월일: 2022. 9. 22.

발 의 자:전재수·김두관·김정호

김회재 · 노웅래 · 맹성규

박상혁 • 박수영 • 송기헌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음.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참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 1. 1. 시행 예정)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4조제8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 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② (생	사용 등의 금지)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③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
	<u>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u>
	<u>니 된다.</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u>보관·진열한 자</u>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